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175
----------	------

발의연월일 : 2024. 12. 3.

발 의 자 : 윤한홍 · 이헌승 · 권성동  
강민국 · 김재섭 · 김선교  
서일준 · 강명구 · 한기호  
김정재 · 송석준 · 최수진  
이종욱 · 서범수 · 김상훈  
김성원 의원(16인)

제안이유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주요 영업의 양수도 등 자본거래를 할 때 일반주주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주이익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의 가액산정기준을 폐지하고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음. 아울러, 원칙적으로 모든 합병 등에

대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공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합병 등의 가액 결정에 있어 객관성·중립성 제고 및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자 하였음.

기업 가치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규제가 수준이 낮았던 분할과 관련해서도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일부 상장기업이 고성장 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후 상장하여 모회사 일반주주의 피해 발생 우려가 지적된 바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신주 일부를 우선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회사 일반주주가 물적분할 후 상장된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주요내용

가.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 가액 결정(안 제165조의4제2항 신설)

주권상장법인은 합병가액 결정 시 주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함.

나.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서 이사회 책임(안 제165조의4제3항 신설)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다.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외부평가(안 제165조의4제4항)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공시하여야 함.

라. 합병 등 관련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안 제165조의5제3항)

주권상장법인 이사회가 합병 등 결의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협의되지 않는 경우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

마. 물적분할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자회사 공모신주 우선 배정  
(안 제165조의7제4항)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 신설법인이 상장 목적으로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분할된 법인의 일반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등의 가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를 “등에”로, “받아야 한다”를 “받아 공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합병 등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5조의5제3항 단서 중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을 “이사회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으로 한다.

제165조의7의 제목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를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우리사주조합원”을 “우리사주조합원 및 제4항에 따른 분할된 법인의 주주”로 한다.

④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분할(「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상법」 제418조에도 불구하고 상장하기 위해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분할된 법인의 주주(대주주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제165조의18제3호 중 “제165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을 “제165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65조의4제2항”을 “제165조의4제4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합병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4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5조의4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물적분할로 인한 신주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이사회가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을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530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기로 결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해당 법인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해당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그 매수가격에 대하여도 반대하

공시해야 한다.

⑤ -----  
-----  
-----  
-----  
----- 제  
4항-----  
-----.

⑥ ----- 제5항-----  
-----  
-----  
-----.

제165조의5(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이사회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한 -----  
-----  
-----  
-----

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⑤ (생략)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에 대  
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  
례) ① ~ ③ (생략)

<신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과 그 주식의 처분 등에 필  
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④·⑤ (현행과 같음)

제165조의7(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  
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65조의4제1항제4호에 따  
른 분할(「상법」 제530조의12  
에 따른 물적분할에 한한다)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분할  
신설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  
을 상장하려는 경우 분할신설법  
인은 「상법」 제418조에도 불  
구하고 상장하기 위해 모집하거  
나 매출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  
의 20 이내에서 분할된 법인의  
주주(대주주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⑤ -----  
우리사주조합원 및 제4항에 따  
른 분할된 법인의 주주-----  
-----  
-----.

